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목 차>

1. 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작 성 자	이름	이수준
	담당부서 (과)	산재예방지원과		직급	6급
	국장	최태호		연락처	044-202-8826
	과장	금정수		이메일	020111065 @mail.go.kr

2023. 03. 03.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		
	2.규제조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 및 제3호, 제13조, 제15조제1항		
	3.위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03.07~2023.03.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에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지침에서는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p> <p>○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사망·부상 또는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의 모든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 <p>○ 위험성평가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와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이행토록 하는 일련의 과정</p> <p>○ 현행 지침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 내 존재하는 위험성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p>○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사업장 내 최초 위험성평가를 착수하는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있어 그 기한을 명확히 하여 착수하도록 권고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기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공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모든 사업장·공사현장에서 최초 위험성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 		
	7.규제내용	<p>○ 위험성평가의 사전준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도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규정</p> <p>○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p> <p>○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하고,</p>		

		- 1개월 이내의 작업·공사에 대한 입법불비를 막기 위한 위험성평가 신속 시행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사업주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사업주</td> <td>산출할 수 없음</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업주	산출할 수 없음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업주	산출할 수 없음							
	<p>9.규제목표</p> <p>○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 등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p> <p>-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및 그 위험의 감소대책을 이해하고 체화하며,</p> <p>- 최초 위험성평가의 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도하는 한편,</p> <p>- 1개월 이내의 작업·공사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이행토록 함으로써,</p> <p>- 위험성을 감소하고 산재 예방의 목적을 달성</p>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p>	<p>제6조(근로자 참여) ----- ----- 때, -----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u>-----.</p>
<p><신 설></p>	<p>1. <u>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p>
<p>1. <u>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u></p>	<p>2. <u>해당 사업장</u>-----</p>
<p>2. <u>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u></p>	<p><삭 제></p>
<p>3. <u>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u></p>	<p>3. <u>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u> <u>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u> <u>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u> <u>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u> <p><u>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u></p> <p><u>③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u>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u></p>	<p>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 (현행) 제6조(근로자 참여)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
- (개정안)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상·중·하 등)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하 이하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을 강화

<위험성평가의 공유>

- (현행)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유해·위험요인별로 남아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
- (개정안)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과 그 위험성, 위험성의 감소대책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동 내용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주지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별도 규정 마련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현행)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최초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개정안)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성립일(사업 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면서,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 정부개입 필요성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까지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고,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그 위험요인은 항상 변동하므로 위험성평가는 일회적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에 해당
-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성을 몇 단계로 나누어 관리할 것인지, 그 중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 위험성 결정 과정에서는 실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느끼는 위험의 정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현행 지침에서는 사전준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을 정하는 중요한 작업에서 근로자가 배제되는 한편,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의견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규정을 강화할 필요

<위험성평가의 공유>

-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 공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에 대해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알릴 유인이 부족한 상황
 - 위험성평가의 취지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 위험성평가 실시 후 그 전반적인 결과와 그에 따르는 준수·주의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지시키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
 -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여,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근로자들이 아는 것이 산재예방이라는 제도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현행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결정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규정하여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잘 이해하고 체화하여 산재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결정하고 대책을 세워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그 위험성은 수시로 변동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연속적인 개념에 해당
- 현행 고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평가와 구분하여 최초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업종이나 작업기간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최초평가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워 착수시기를 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나,
 - 최초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착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신속한 위험성평가 착수와 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고,
 - 1개월 미만의 작업이나 공사에 대한 입법 불비를 막기 위해 동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험성평가에 착수하여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위험성 감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사전준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도 근로자의 참여를 규정할 필요

<위험성평가의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과 그 위험성,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감소대책 실행 계획과 결과, 위험성 감소를 위한 준수·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여,
 - 결과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회피를 통해 근로자의 사망·부상 또는 질병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할 필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에 대한 기한을 두지 않으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큼
 -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정책 우선순위가 크고,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의무사항에 해당
 - 사업주들이 위험성평가를 지체없이 착수·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검토			

3. 규제목표

-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단계 및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 결정 및 실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판단에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 자신의 작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숙지·체화할 수 있도록 하며,
 - 최초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화 하고, 1개월 이내 작업이나 공사의 입법 불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 신속한 산재예방 활동 전개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며,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공사에서 신속하게 위험성평가에 착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은
 -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의무의 취지를 고시에서 보다 구체화·명확화한 것이고,
 - 둘째,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가 숙지·체화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며,
 - 셋째, 1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공사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작업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그 목적이 타당하고, 규제 영향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아 이해충돌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관리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지속적인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일몰 설정은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EU>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 1996」
 - EU 회원국가 내 경영진 및 노동자들의 위험성평가 시 지원하고자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은 작업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the employers, management and workers and/or their representatives)”의 참여를 통해 수행해야 하고, 이들은 모두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Part A 3.2.)
 -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의 존재에 대해 공지하는 항목을 두고(Part B 6.) 있어 작업에 종사하는 해당 근로자보다 더욱 확대된 범위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음
- <ILO> 「Training Package on Workplac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13」
 - 중소기업을 위한 작업장 내 위험성평가와 관리에 관한 교육 패키지로, 위험성평가를 5단계 프로세스로 간단히 설명하면서, “전체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entire workforce)”를 통해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설명(Part I 14p.)
- 해외에서는 위험성평가 착수 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위험성평가 실시가 상시 의무화되어 있어 사실상 사업장 성립 즉시 실시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시기의 불명확에 대한 피규제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불명확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위험성평가 착수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위험성평

가의 '착수'에 대한 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U, ILO	일치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 한편, 1개월 이내의 작업·공사의 경우 공정이나 작업이 복잡·다기 하지 않으므로,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한 규정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대상은 아니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추진하여 준수를 독려할 계획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재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평가 소단계에 노·사 참여 및 협업을 강화’하도록 발표('22.11.30)
 - 그간 최초 위험성평가를 규정하면서 착수·시행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극대화
 - 해외(EU 등)에서도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2. 향후 평가계획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업종별·규모별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방관서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도 등을 지속 검토

3. 종합결론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평가 결과와 위험성 감소대책, 준수·주의사항 등을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공유하도록 하며,
 - 최초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1개월 이내 작업·공사의 입법불비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단서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미 위험성평가를 의무로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있어 필요 최소한의 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준수 가능성이 높고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연계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사업장 위험성평가 기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사업주
활동제목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비용항목	노동, 교육훈련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이행 과정 등 일부 절차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추가적으로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매우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p><위험성평가의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는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들고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명칭이나 형식에 특별한 정함이 없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회의로서, 현재도 현장에서 작업 전 작업공유 등의 형태로 자율적으로 널리 실시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한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됨

	<p><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사업주
활동제목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편익항목	산재예방에 따른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참여 강화를 통한 위험성평가의 효과성 제고 정도에 대한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직·간접 보상비용, 처벌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작업중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 등이 절약 <p><위험성평가의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효과성이 제고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 편익 산출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높아지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직·간접 보상비용, 처벌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작업중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등이 절약 <p><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의 빠른 착수·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의

	<p>객관적 산출은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신속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하는 직·간접 보상비용, 처벌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작업중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등이 절약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근로자
활동제목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편익항목	산재예방에 따른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참여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 - 다만,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로 근로손실, 치료비용 보전 등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 <p><위험성평가의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에 따른 직접적 편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곤란 - 다만,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로 근로손실 방지, 치료비용 보전 등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 <p><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의 빠른 착수·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근로자 편익의 객관적 산출은 곤란 - 다만, 신속한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근로손실, 치료비용 보전 등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